

수탁회사보고서

수탁회사보고서는 투자신탁의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『간접투자자산운용업』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수탁회사명 : (주) 우리은행
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2-4898

1. 투자신탁의 개요

- 가. 투자신탁 명칭 : 클래스원 신종MMF S-36호
- 나. 분류 :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
- 다. 수탁기간 : 2007.06.07 ~ 2008.06.06
- 라. 자산운용회사 : 대한투자신탁운용
- 마. 판매회사 : 하나은행, 하나대투증권, 하나IB증권

2.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4. 주주총회 의결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적시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
| 선임일 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
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2007.11 | 서일경영회계 | 12개월 | 6,050,000 | 서면계약 |

7. 법령확인사항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·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되는지 여부
 - 부합함
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-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음
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가치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간접투자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적정히 산출하고있음.

-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,신탁약관(투자회사 정관)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 내역
 - 해당사항없음

- 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하나UBS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있습니다.

8.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회사의 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운용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